의안 번호

1881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교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2. 7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7.(화)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9.(목)

2. 제안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추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체험관의 목적, 정의, 위치, 기능(안 제1조 ~ 제4조)
- 나. 이용대상ㆍ시간, 휴관일, 입장료, 입장료 면제 및 감면(안 제5조 ~ 제9조)
- 다. 입장료 등 반환, 입장 제한(안 제10조 ~ 제11조)
- 라.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, 자원봉사자, 위탁운영(안 제12조 ~ 제14조)

4. 근거법규: 「지방자치법」제9조 및 제144조

5. 검토의견

- O 본 조례안은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O 역사과학 체험을 통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- O 상위법과의 저촉여부,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 조례안 내용 전반을 검 토한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